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중복되는 자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게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제2호의 자구수정

— 제1호에 규정한 “사업시행자로부터”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써
- 제2조 제2호중 제1호의 문안과 중복되는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